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2015. 12. 14(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5. 11. 18. 성북구청장(의안번호 133호)
- 나. 회부일자 : 2015. 11. 19.
- 다. 상정일자 : 제238회 성북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15. 11. 23. 상정·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일환 교육문화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생활예술 등 모든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과 정책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창조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는바,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 제4조)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위원회는 성북구의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자문 및 의결함
-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 및 임기 규정(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로 구성
 - 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규정(안 제7조, 제8조)
 -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황규설)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창조도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창조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으로는
 - 안제1조~제3조는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를
 - 안 제4조 ~제6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분과 위원회 운영 등을
 - 안제7조 ~ 제13조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등, 위원의 해촉, 의견의 청취, 위원회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하고,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 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상의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한 제출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예산조치 : 없음
- 입법예고 : 2015. 10. 15 ~ 11.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3
----------	-----------

발의
년월일 2015년 11월 18일
발의자 성북구청장

1. 수정이유

- 뜻의 의미를 알기쉽게 하고 포괄적 개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5조 2항을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 안 제6조 2항3호중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도시정책” 을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 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사항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2항을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2항3호중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도시정책"을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로 수정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구성) ① (생략)</p> <p>② <u>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u></p> <p>③ (생략)</p> <p>1. ~ 2.(생략)</p> <p>④ (생략)</p>	<p>제5조(구성) ① (생략)</p> <p>② <u>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생략)</p> <p>1. ~ 2.(생략)</p> <p>④ (생략)</p>
<p>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역사문화, 교육, 자연생태, <u>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에 기반한 도시정책, 사회적 기업과 문화예술과의 협조체계 등</u></p> <p>4. (생략)</p>	<p>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 <u>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u> ----- -----</p> <p>4. (생략)</p>